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촉

「소상공인 재무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에 대한

原 價 計 算 報 告 書

2026. 05.

재 단
법 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
HYUNDAI INDUSTRY INFORMATION INSTITUTE

《 목 차 》

Ⅰ. 원가계산의 결과 1

Ⅱ. 원가계산의 개요 3

Ⅲ. 원가요소별 계산기준 5

Ⅳ. 원가계산 산출내역 9

1. 원가계산서 10

2. 개발단가・보정계수 12

3. 기 능 점 수 16

4. 직 접 경 비 21

Ⅴ. 참 고 자 료 24

Ⅰ. 원가계산의 결과

Ⅰ. 원가계산의 결과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 기준일 현재로 산정한 **"소상공인 재무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 가 계 산 결 과 ▣

■ 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단위	금 액	비 고
소상공인 재무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1식	**280,000,000**	기능점수 방식

주 1) 세부산출내용은 이하의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 05.

재 단 법 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

이 사 장 최 진 우

책임연구원 이 준 혁

Ⅱ. 원가계산의 개요

Ⅱ. 원가계산의 개요

1. 원가계산의 목적

본 원가계산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촉에 의하여 「**소상공인 재무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준거하여 적정 용역비를 산정・제시하여 예정가격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조사대상

가. 과　제　명 : 소상공인 재무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나. 규　　격 : 제안요청서에 의거
다. 조사기준일 : 2026. 05.

3. 조사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라.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4호, 2026. 1. 2. 시행)
마.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5. 8. 11.)
바. 2025년도 시중물가지 및 시중가격, 시중노임단가
사. 제시된 과업내용서
아. 기타 조사 자료 및 참고자료

4. 용역의 전제조건

본 조사는 상기 여건을 전제로 조사된 것이므로 그 결과는 이하 산출내역서와 같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산정결과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 과업범위 및 사양서의 변경
나. 용역계약조건 및 사항의 변동
다. 용역시행일의 변동
라. 기준단가 및 공공요금의 변동
마. 기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의 발생 등

Ⅲ. 원가요소별 계산기준

Ⅲ. 원가요소별 산출기준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제3장 SW사업 구현단계' '기능점수 방식'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방식이란 소프트웨어 개발규모를 기능점수로 측정하고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기능점수는 사용자 관점에서 측정된 소프트웨어 기능의 양으로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능점수 방식의 적용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과업내용, 특징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기능점수 방식 적용이 불합리한 다음과 같은 사업유형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투입공수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② R&D 성격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③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방식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④ 데이터 튜닝 및 최적화, 테스트 등 기능점수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⑤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크게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직접경비, 이윤의 세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원가는 기능점수로 측정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규모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고 여기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직접경비는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합니다.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계상합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가.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

데이터와 트랜잭션 기능점수를 구분하여 측정합니다.

데이터 기능점수 측정은 사용자의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량을 말합니다. 데이터 기능점수 측정에는 내부논리파일(ILF)과 외부연계파일(EIF)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들의 개수와 각각의 복잡도(가중치)에 의해 데이터 기능점수가 결정됩니다.

* 데이터기능점수 = ∑(내부논리파일 기능수×가중치) + ∑(외부연계파일 기능수×가중치)

트랜잭션 기능은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단위프로세스의 집합을 말하며,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 기능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개수와 각각의 복잡도(가중치)에 의해 트랜잭션 기능점수가 결정됩니다.

* 트랜잭션기능점수 = ∑(EI 기능수×가중치) + ∑(EO 기능수×가중치) + ∑(EQ 기능수×가중치)

나. 기능점수당 단가

기능점수당 단가는 2024년 조정된 기능점수당 단가(표준단가 605,784원)를 기준으로 기능점수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SW기술자 평균 임금, 물가,SW개발생산성)를 적용하여 현재 605,784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보정계수

기능점수당 단가는 개발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보통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실제의 개발비용은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생산성과 발주기관의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에 따른 프로젝트의 복잡도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규모 보정계수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규모가 커지면 생산성은 증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생산성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규모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 변화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며, 이를 감안하는 것이 규모 보정계수입니다.

연계복잡성 수준 :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연계 기관수가 증가함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의 복잡성을 의미합니다.

성능요구 수준 :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에 대한 사용자 요구수준의 복잡성을 의미합니다.

운영환경 호환성 : 다중사이트에서의 운영 여부와 플랫폼의 상이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보안성 수준 : 시큐어코딩, 웹취약점점검, 암호화점검,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성에 대한 요구수준을 의미합니다.

2. 이 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의 이윤율은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발원가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윤을 계상합니다.

* 단, 본문에서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기술료율 수준인 20.0% 적용 하였습니다.

3. 직 접 경 비

직접경비는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합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제1장 4.1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경비 항목 이외에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의 12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시험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본 원가계산에서는 제출도서 인쇄비, 와 를 직접경비 항목으로 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SW기능개선 원가 중 재개발부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제4장 SW사업 운영단계' 'IV-3 소프트웨어재개발비'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1.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는 재개발 시, 신규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규모와 수정 후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와 수정 없이 재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규모를 구한 후, 이들에 대해 기능점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개발 원가를 구하고 직접경비와 이윤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합니다.

가. 신규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나.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규모는 수정 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에 시험단계 비율 범위 내 적정 비율(0~25%)적용하여 산출.

다.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란 기존의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 중 수정이 필요한 기능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능변경 규모를 산정하고 재사용 난이도를 적용하여 산정.

Ⅳ. 원가계산 산출내역

1. 원가계산서

S/W 개발비 원가계산서

■ 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표 01>

단위: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개 발 원 가	기능점수당 단가 605,784 원× 보정계수 1.5101 × 총기능 점수 231.700 FP=	211,959,992
이 윤	개발원가 211,959,992 원× 20% -85	42,391,913
직 접 경 비	제출도서 인쇄비 : 193,550 원 : :	193,550
S/W개발비	개발원가 + 이윤 + 직접경비	254,545,455
부가가치세	S/W개발비 254,545,455 원× 10%	25,454,545
합 계 금 액	S/W개발비 + 부가가치세	280,000,000

주 1) 개발원가 :

* 기능점수당 단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표 3-22〕에 의거
* 보정계수 - <표 03> 보정계수 산출표 참조
* 총기능 점수 - <표 04> 기능점수 집계표 참조

주 2) 이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②항 2호에 의거 25% 이내

* 단, 본문에서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기술료율 수준인 20.0% 적용
* 총액 천원미만 절사를 위해 이윤에서 -85원 차감

주 3) 직접경비 : <표 06> 직접경비 집계표 참조

2. 개발단가・보정계수

기능점수 단가

<표 02>

단 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합 계**
가중치에 따른 단가	115,099	145,388	193,851	151,446	**605,784**
(가중치)	(0.19)	(0.24)	(0.32)	(0.25)	(1.00)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표3-22〕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기능점수 가중치

보정계수 산출표

<표 03>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적용보정계수**
1.2800	1.06	1.05	1.00	1.06	**1.5101**

주 1) 적용보정계수 = 규모 × 연계복잡성 × 성능 × 운영환경 × 보안성

■ 규모 보정계수

규 모	산 출 내 역	보정 계수
231.700 FP	= 0.4057 x ($\log_e$(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시 1.2800, 3,000FP 초과시 1.1530을 적용한다.)	1.2800

주 1) 규모 : <표 04> 기능점수 집계표 참조

■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구 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 계수	적 용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1.06
〔 04 〕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1.06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1.12	
성능 요구수준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0.91	1.05
〔 04 〕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0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5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1.09	

구 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 계수	적 용
운영환경 호환성 〔 02 〕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1.00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 되도록 설계된다.	1.00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 되도록 설계된다.	1.06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다중 사이트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1.19	
보안성 요구수준 〔 04 〕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 보호 중 1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0.97	1.06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0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6	
	5. 항목 4)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1.08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표3-23〕규모 보정계수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표3-24〕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3. 기 능 점 수

기능점수 집계표

<표 04>

■ 기능점수 집계

기 능 유 형	기능점수	보 정 율		**합 계**
신규개발	221.80	해당없음		221.800
기능변경	6.93	× 재사용 난이도	1.24	8.587
기능삭제	측정비대상	해당없음		
수정없이 재사용	7.50	× 시험단계비율(0~25%)	17.5%	1.313
		총 기능 점수 :		**231.700**

주 1) 기능점수 : <표 05> 기능수 산출표 참조 (간이법 적용)

2) 합계 : 신규개발 + 기능변경 + 수정없이 재사용

3)보정율 :

■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 1.24

구 분	난이도에 대한 설명	난이도 수준	**적 용**
①구조화 및 어플리케이션 명확화 정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전혀되어 있지 않아 모듈과 어플리케이션 기능의 대응 정도가 거의 없음	50	30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 기능의 대응 정도가 낮은편임	40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보통 정도로,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보통 수준임	30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높은 편임	20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매우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 기능의 대응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10	
②문서화 및 소스코드의 서술화 정도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어려운 수준	50	30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어려운 수준	40	
	문서화와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보통 수준	30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잘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용이한 수준	20	
	문서화와 소스코드의 서술화가 모두 잘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수정이 매우 용이한 수준	10	

난이도 수준 계산 1+((①+②)/2)/100*0.8

※ 매우 어려움- 50, 어려움- 40, 보통- 30, 쉬움-20, 매우쉬움-10

기능수 산출표

<표 05>

기능명				데이터 및 트랜잭션 기능				FP산출	재사용유형	FTR 변경	DET 변경	FTR 변경률	DET 변경률	기능 변경률	영향 계수	재사용 기능점수	비고
①어플리케이션명	②세부 업무명	③단위프로세스명	단위프로세스 설명	FP유형	개수	FTR	DET	가중치									
■ 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SFR-001 (기존메뉴) 자동화 처리조회, 현금흐름 기표, 전자결재 기능 고도화																	
	자동화 처리	조회 화면	자동화처리조회 데이터 테이블	ILF	1			7.5	수정없이 재사용							7.500	
		조회	금융관리시스템 연동 거래내역 조회	EQ	1	3	10	3.9	기능변경	2	3	66.7%	30.0%	48.3%	0.50	1.950	
	현금흐름	기표	지출결의서 작성 시 활동별 현금흐름 자동 산출·기표	EI	1			4.0	신규개발							4.000	
		데이터	현금흐름 기표 데이터 테이블 (유입/유출 구분)	ILF	1			7.5	신규개발							7.500	
	전자결재	전체선택	전자결재 대상 전체선택 처리	EI	1	2	5	4.0	기능변경	1	1	50.0%	20.0%	35.0%	0.50	2.000	
		담당자지정	전자결재 담당자 지정 처리	EI	1	2	5	4.0	기능변경	1	1	50.0%	20.0%	35.0%	0.50	2.000	
		상태조회	전자결재 상태값 조건 조회	EQ	1	3	8	3.9	기능변경	1	2	33.3%	25.0%	29.2%	0.25	0.975	
》SFR-002 (신규메뉴) 결산계정과목 대체																	
	결산산출	메뉴 데이터	결산산출 대분류 및 하위메뉴 구성 테이블	ILF	1			7.5	신규개발							7.500	
	계정과목	자동대체 조회	연도말 날짜 및 사전매칭치 조회	EQ	1			3.9	신규개발							3.900	
		자동대체 저장	사전매칭치 자동대체 처리 및 저장	EI	1			4.0	신규개발							4.000	
	결산계정과목	대체 조회	FMS 계정과목 잔액 조회	EQ	1			3.9	신규개발							3.900	
			디브레인 계정 배분화면 조회	EQ	1			3.9	신규개발							3.900	
		대체 저장	디브레인 계정 배분 검증을 마친 후 저장 처리	EI	1			4.0	신규개발							4.000	
》SFR-003 (신규메뉴) 원가배부																	
	원가배부	데이터	수익·비용 계정과목별 잔액, 프로그램별 비중 저장 테이	ILF	1			7.5	신규개발							7.500	
		조회	계정과목별 잔액 및 직접/간접 구분 조회	EQ	2			7.8	신규개발							7.800	
		비중입력·저장	단위사업별 비중 수기입력 및 합계100 검증 후 저장	EI	1			4.0	신규개발							4.000	
		검증조회	전체 계정별 잠액 합계와 배분금액 합계 일치 검증 조회	EO	1			5.2	신규개발							5.200	

기능명				데이터 및 트랜잭션 기능				FP산출	재사용유형	FTR 변경	DET 변경	FTR 변경률	DET 변경률	기능 변경률	영향 계수	재사용 기능점수	비고
①어플리케이션명	②세부 업무명	③단위프로세스명	단위프로세스 설명	FP유형	개수	FTR	DET	가중치									
》SFR-004 (신규메뉴) 현금흐름표 조정																	
	현금흐름 조정	데이터	현금흐름 기표 데이터 및 기타활동 배분조정 저장 테이	ILF	1			7.5	신규개발							7.500	
		조회	기타활동 및 변경활동 좌우측 조회	EQ	1			3.9	신규개발							3.900	
		입력·저장	기타활동 수치를 운영·투자·재무활동으로 배분 입력 및	EI	1			4.0	신규개발							4.000	
		일치검증	좌측·우측 합계액 일치 검증 조회 및 저장가능 여부 판정	EO	1			5.2	신규개발							5.200	
》SFR-005 (신규메뉴) 총계정원장 산출																	
	총계정원장	데이터	변경 계정과목 기준 전기이월·차변·대변·연말잔액 저장	ILF	1			7.5	신규개발							7.500	
		조회	연도별 유계정원장 조회	EQ	1			3.9	신규개발							3.900	
		전기업로드	전기 유계정원장 파일 업로드 처리	EI	1			4.0	신규개발							4.000	
		검증·저장	검증(자산-부채-순자산=수익-비용) 통과 후 저장	EO	1			5.2	신규개발							5.200	
		엑셀다운	유계정원장 산출 결과 엑셀 다운로드	EQ	1			3.9	신규개발							3.900	
》SFR-006 (신규메뉴) 재정상태표 및 현금흐름표 산출																	
	재정상태표	데이터	자산·부채·순자산 잔액 저장 테이블 (전기금액 포함)	ILF	1			7.5	신규개발							7.500	
		전기업로드	전기 재정상태표 파일 업로드 처리	EI	1			4.0	신규개발							4.000	
			당년도 조회시 전기금액 로드	EQ	1			3.9	신규개발							3.900	
		산출·저장	총계정원장 잔액 기준 재정상태표 산출 및 저장	EO	1			5.2	신규개발							5.200	
		엑셀다운	재정상태표 산출 결과 엑셀 다운로드	EQ	1			3.9	신규개발							3.900	
	현금흐름표	데이터	활동별 현금흐름 잔액 저장 테이블 (전기금액 포함)	ILF	1			7.5	신규개발							7.500	
		전기업로드	전기 현금흐름표 파일 업로드 처리	EI	1			4.0	신규개발							4.000	
			당년도 조회시 전기금액 로드	EQ	1			3.9	신규개발							3.900	
		산출·저장	현금흐름표 조정화면 기준 현금흐름표 산출 및 저장	EO	1			5.2	신규개발							5.200	
		엑셀다운	현금흐름표 산출 결과 엑셀 다운로드	EQ	1			3.9	신규개발							3.900	

기능명				데이터 및 트랜잭션 기능				FP산출	재사용유형	FTR 변경	DET 변경	FTR 변경률	DET 변경률	기능 변경률	영향 계수	재사용 기능점수	비고
①어플리케이션명	②세부 업무명	③단위프로세스명	단위프로세스 설명	FP유형	개수	FTR	DET	가중치									
》SFR-009 (신규메뉴) 프로그램별·성질별 재정운영표 산출																	
	재정운영표	데이터	프로그램별·성질별 수익·비용 잔액 저장 테이블 (전기금	ILF	1			7.5	신규개발							7.500	
	프로그램별	전기업로드	전기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파일 업로드	EI	1			4.0	신규개발							4.000	
	재정운영표	산출·저장	원가배부 자료 기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산출 및 저	EO	1			5.2	신규개발							5.200	
		조회	프로그램별 조회	EQ	1			3.9	신규개발							3.900	
		엑셀다운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엑셀 다운로드	EQ	1			3.9	신규개발							3.900	
	성 질 별	산출·저장	유계정원장 수익·비용 잔액 기준 성질별 재정운영표 산	EO	1			5.2	신규개발							5.200	
	재정운영표	조회	연도별 조회	EQ	1			3.9	신규개발							3.900	
		엑셀다운	성질별 재정운영표 엑셀 다운로드	EQ	1			3.9	신규개발							3.900	
》SFR-007 (신규메뉴) 알리오 공시자료 산출																	
	알 리 오	데이터	알리오 공시용 재무제표 3개 항목 저장 테이블 (백만원	ILF	1			7.5	신규개발							7.500	
	공 시 자 료	산출·저장	재무제표 3개 상위레벨 조회 및 백만원 단위 산출·저장	EO	3			15.6	신규개발							15.600	
		엑셀다운	알리오 공시자료 엑셀 다운로드	EQ	1			3.9	신규개발							3.900	

4. 직 접 경 비

직접경비 집계표

<표 06>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제출도서 인쇄비	193,550	<표 07>
합 계	**193,550**	

제출도서 인쇄비

■ 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표 07>

단위 : 원

구 분		수량(A) ×	수량(B) ×	수량(C) ×	단 가 =	금 액
■ 보 고 서 류					(소계)	187,550
착수보고서	내지(1도, A4)		2 부×	28 면×	50 원 =	2,800
				" 스템플러 제본 "		
주간・월간 보고서				" 파일로 대체 "		
수시・기타 보고서				" 파일로 대체 "		
중간보고서	내지(1도, A4)		3 부×	60 면×	50 원 =	9,000
(47,250 원)	내지(4도, A4)		3 부×	35 면×	250 원 =	26,250
	표지(4도, 무선,코팅)		3 부×		4,000 원 =	12,000
최종보고서	내지(1도, A4)		5 부×	120 면×	50 원 =	30,000
(137,500 원)	내지(4도, A4)		5 부×	70 면×	250 원 =	87,500
	표지(4도, 무선,코팅)		5 부×		4,000 원 =	20,000
■ 저 장 매 체					(소계)	6,000
최종보고용	USB memory			1 개×	6,000 원 =	6,000
제출도서 인쇄비 합 계						**193,550**

주 1) 단가는 시중거래 조사가격 적용

Ⅴ. 참 고 자 료

http://sw.or.kr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 개정판



KOSA KOREA AI·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

발행일 : 2025년 8월

발행처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담당자 연락처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곽윤진
(02-2188-6911, kyj@sw.or.kr)

1 개요

SW사업 구현단계는 소요제기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에서부터 설계 및 구현을 거쳐 시험에 이르는 전 과정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는 ISO/IEC 12207의 13개 개발 공정을 참조하여 분석, 설계, 구현, 시험의 4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3-1 ▌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의 각 단계별 공정과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3-1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별 공정과 주요 활동

단계	공정	활 동
분석	개발준비	•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모델 선택 • 개발계획 작성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설계	시스템 설계	• 시스템 설계 • 시스템 설계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 소프트웨어 구조 정의 • 인터페이스 설계 • 데이터베이스 설계 • 사용자 문서 개발 •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상세설계 •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 사용자 문서 갱신 • 소프트웨어 단위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 소프트웨어 상세설계/시험 검토 및 평가
구현	소프트웨어 코딩 및 단위시험	• 소프트웨어 단위 코딩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 소프트웨어 단위 및 데이터베이스 시험절차/자료 준비 • 사용자 문서 갱신 •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 소프트웨어 코드 및 단위시험 결과 검토
시험	소프트웨어 통합	• 소프트웨어 통합계획 작성 • 소프트웨어 통합 및 시험 • 사용자 문서 갱신 •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준비 • 소프트웨어 통합결과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실시 • 사용자 문서 갱신 • 소프트웨어 산출물 검토 • 감리 지원
	시스템 통합	• 시스템 통합 및 시험 • 시스템 자격시험 준비 • 시스템 통합결과 검토
	시스템 자격시험	• 시스템 자격시험 실시 • 시스템 자격시험 검토 • 감리 지원
	소프트웨어 설치	• 소프트웨어 설치계획 작성 •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인수지원	• 소프트웨어 인수시험 지원 • 소프트웨어 인도 • 발주자 사후지원

2 소프트웨어 개발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은 소프트웨어 개발규모를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로 측정하고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기능점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점수 방식의 적용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과업내용, 특징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기능점수 방식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법 비교**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법	특징	산정 방법
기능점수(FP) 방식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와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소프트웨어개발비를 산정함	(기능점수×기능점수 단가×보정계수) +직접경비+이윤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과거의 유사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투입인력 정도를 기초로 한 경험적 판단에 의해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능점수방식의 적용이 곤란한 특정 사업유형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투입공수 방법 적용가능 소프트웨어 유형에 대해서는 2.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참고	(투입인력수×투입기간 ×기술자직무별단가)+ 제경비+기술료+ 직접경비

※ 기능점수(FP) 방식에 의한 SW개발비 산정 시 기능점수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에 상응하는 항목이 반영되어있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2.1 기능점수 방식

2.1.1 기능점수 방식 개요

■ **기능점수 방식이란?**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 방법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사용자가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인도되는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소프트웨어 규모 측정방법으로 ISO/IEC 14143(FSM; Functional Size Measurement)으로 SW Size에 대한 국제표준이며,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관리 및 재개발을 위한 비용과 자원 소요를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능점수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적 요구사항을 측정한다.
- 기능점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의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떠한 기능을 요구했는지"의 수요자 관점에서 측정한다.
- 개발 이전에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다.
- 개발은 물론 기획, 운영 등 전 수명주기에 걸쳐서 측정 가능하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의 업무량을 조직, 구현 기술, 공수, 적용 방법론, 물리적 또는 기술적 컴포넌트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기능점수 방법은 위와 같은 장점이 있어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단, 기능점수 방식 적용이 불합리한 다음과 같은 사업유형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투입공수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 홈 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 R&D 성격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방식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 데이터 튜닝 및 최적화, 테스트 등 기능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부가세 제외)

■ **기능점수란?**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란 사용자 관점에서 측정된 소프트웨어 기능의 양으로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이다.

소프트웨어 기능은 사용자 관점에서 갖는 논리적 의미에 따라 크게 데이터 측면의 기능과 트랜잭션 측면의 기능으로 구분된다.

이들을 다시 세분하면 데이터 기능에는 내부논리파일(ILF)과 외부연계파일(EIF)의 2가지 유형이 있으며, 트랜잭션 기능에는 세부적으로 외부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의 3가지 유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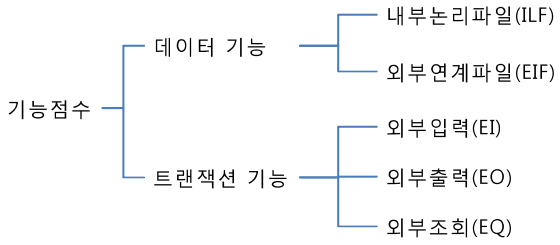


그림 3-2 소프트웨어 기능의 유형 분류

기능점수의 각 유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능점수 방식의 단계별 설명에서 다시 다룬다.

표 3-3 소프트웨어 규모측정 방법 비교

구분	기능점수	코드라인수
관점비교	• 사용자 관점 • 논리적 관점 • What	• 개발자 관점 • 물리적 관점 • How
측정대상	• 트랜잭션 기능 • 데이터 기능	• 트랜잭션 기능
측정시점	• 개발요건만 식별되면 언제든지 측정가능	• 물리적인 소스코딩이 완료된 구현공정 이후
복잡도 평가	• 단순/보통/복잡 등 3단계 평가	• 복잡도 평가 불가능
측정 자동화 가능성	• 자동 규모측정에 한계점 존재	• 자동 규모측정 가능
국제 표준	• ISO/IEC 14143 등 국제표준	• 비 표준화

■ **기능점수 방식의 종류**

기능점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기능점수 산정방법(정통법)과 평균 복잡도를 적용하는 방법(간이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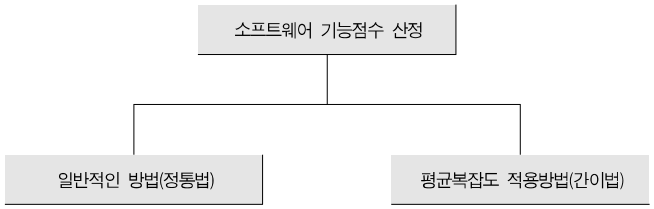


그림 3-3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방식의 구분

○ 정통법 :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도출하고, 각 기능의 유형별 복잡도를 고려하여 정확한 기능점수 산정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상 설계공정 후 사용된다.

○ 간이법 : 기능의 복잡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 절차는 정통법과 동일하나 기능점수 산정 시 기능 유형별 평균 복잡도를 적용하여 기능점수를 산출한다. 통상적으로 기획 및 발주단계에서의 기능점수 측정에 사용된다.

표 3-4 정통법과 간이법의 장단점 비교 및 적용시점

구분	정통법	간이법
장점	• 규모측정 정확도가 간이법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기능점수 측정 소요시간이 정통법 대비 상대적으로 짧음 • 기능점수 측정 지식 습득시간이 정통법 대비 상대적으로 짧음
단점	• 기능점수 측정 소요시간이 간이법 대비 상대적으로 길 • 기능점수 측정 지식 습득시간이 간이법 대비 상대적으로 길	• 규모측정 정확도가 정통법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적용시점	• 개발요건 및 요건별 상세설계정보가 제공되는 시점 즉, 설계공정 이후부터 폐기까지	• 개발요건만 정의되면 예산수립, 사업발주,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적용가능

■ **기능점수 방식의 SW개발비 산정**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크게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직접경비, 이윤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원가는 기능점수로 측정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규모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고 여기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직접경비는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계상된다.

이상의 부문을 포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하는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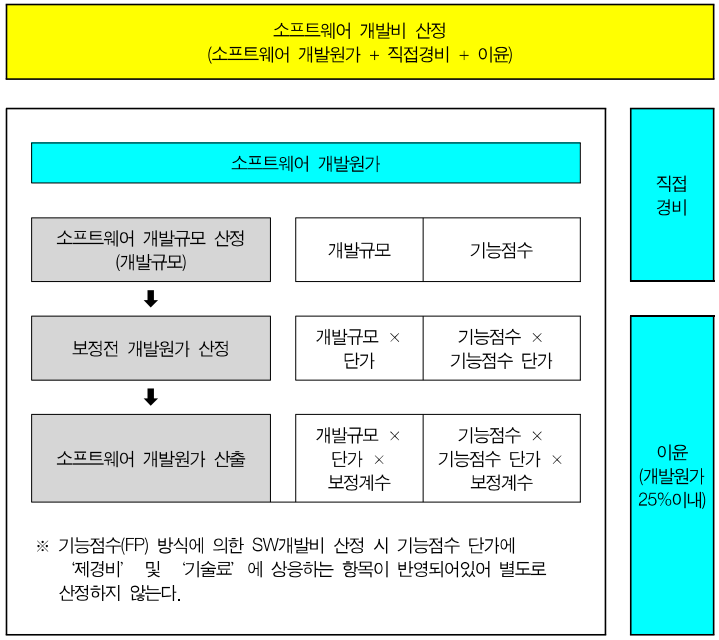


그림 3-4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구성요소

2.1.2 절차별 주요 내용

표 3-5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 개발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개발 규모(기능점수) 산정방법(정통법 또는 간이법)을 결정한다.	개발대상 업무 기능 요구사항 규모산정 방법
2. 개발대상 SW 기능점수 산정	○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개발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식별하고, 복잡도를 고려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개발대상 SW 기능점수
3. 보정전 개발원가 산정	○ 산정된 기능점수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전 개발원가를 산정한다. - 보정전 개발원가 =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기능점수(FP) 방식에 의한 SW개발비 산정 시 기능점수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 에 상응하는 항목이 반영되어있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보정전 개발원가
4. 보정후 개발원가 산정	○ 소프트웨어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보정요소별로 보정계수를 식별한다. - 보정요소 : 규모보정,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 식별된 보정계수에 따라 개발원가를 보정한다. - 개발원가 = 보정전 개발원가 × 보정계수	보정후 개발원가
5. 직접경비 및 이윤 산정	○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산정한다.	직접경비 이윤
6.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한다. - 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소프트웨어 개발비

5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5.1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

5.1.1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 개요

소프트웨어 재개발은 사용자에게 인도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수정하는 업무로 기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추가하는 신규개발과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일부 기능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일부 기능은 수정 없이 재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는 재개발 시, 신규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규모와 수정 후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와 수정 없이 재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규모를 구한 후, 이들에 대해 기능점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개발 원가를 구하고 직접경비와 이윤을 더하여 산정한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총 재개발 원가 + 직접경비 + 이윤

○ 재개발 수행활동 구분

소프트웨어 재개발은 신규기능 추가, 기존기능 재사용(수정 후 재사용 및 수정없이 재사용)의 활동을 수행한다. 수정 후 재사용에는 기능변경과 기능삭제가 포함되나 비용산정에서는 기능변경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표 4-39 재개발비 산정대상 여부

재개발 수행활동 구분			재개발비 산정 대상 여부	비고
신규기능 추가			대상	
기존기능 재사용	수정 없이 재사용		대상	
	수정 후 재사용	기능변경	대상	
		기능삭제	비대상	

○ 재개발과 유지관리의 구분

기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경우에 유지관리비와 재개발비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수준이 유지관리 범위를 초과하면 재개발로 판단하고, 그 이하이면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개발과 유지관리를 구분하는 기능변경 수준은 유지관리 대상사업의 전체규모 대비 연간 7% 이상의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재개발 범위로 본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유지관리 계약시점에 합의한 일정규모 또는 일정공수를 초과하는 경우 재개발 대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예시) OO시스템의 유지관리 발주시점에 개발되어있는 소프트웨어 1,000FP 중 기능변경량이 70FP를 초과하는 것으로 식별되면, 유지관리대가를 적용하지 않고 재개발비 산정방식을 따른다.

○ 재개발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

실질적으로는 재개발이지만 설계변경률이 0으로 산정되어 재개발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메인프레임 기반에서 웹 기반으로 재개발하면서 기능변경량이 0으로 산정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총 재사용비가 0원으로 산정되므로 재사용비를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신규 개발비 대가기준을 적용하되 분석/설계 단계의 대가는 제외하고 구현/시험 단계의 개발비만 다시 산정하여 대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재사용 대가산정 과정에서 측정하는 데이터요소유형(DET) 및 참조파일유형(FTR)의 변경률이 100%보다 크게 측정되는 확장 재사용사업의 경우, 재사용비가 불합리하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신규개발로 판단하여 산정할 수 있다.

5.1.2 절차별 주요 내용

표 4-40 재개발비 산정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 재개발 대상 업무 선정 ○ 재개발 요건 정의	재개발대상업무 재개발 요건
↓		
2. 재개발 대상 기능 유형 식별	○ 재개발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 유형을 식별한다. ○ 재개발 대상을 선정한다.	수정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
↓		
3. 재개발 대상 기능 규모 산정	○ 신규개발 기능규모를 산정한다. ○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규모를 산정한다. ○ 보정전 수정 후 재사용 기능규모를 산정한다. - 기능변경 규모를 산정한다.	신규재개발 기능규모 수정없이 재개발 기능규모 보정 전 수정 후 재개발 기능규모
↓		
4. 재사용 난이도 산정	○ 재개발 난이도 수준을 산정한다. ○ 수정 후 재사용 기능규모를 산정한다.	재사용 소프트웨어 난이도 수준
↓		
5.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및 재개발 원가 산정	○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를 산정한다. ○ 산정된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 전 재개발 원가를 구한다. ○ 보정 전 재개발원가에 보정계수 값을 곱하여 보정 후 재개발원가를 구한다.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보정 전 재개발원가 보정 후 재개발원가
↓		
6. 직접경비 및 이윤 계산	○ 해당 소프트웨어 재개발에 관련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 이윤은 재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산정한다.	직접경비 이윤
↓		
7.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를 산정한다. - 재개발비 = 보정후 재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보고서류 및 기타유인물

칼라라인

www.colorline.co.kr/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위치. 복사, 제본, 컬러, 실사, 출력, 스캔, 현수막, 고속문서스캔, 캐드도면, 캔버스액자, X, Y배너, 인쇄, 간판취급.

* 하단 가격표는 부가세(VAT) 별도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카드결재시엔 부가세 10%가 추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고속복사 / 대형복사

규격	일반용지 (복사)				색지,간지 복사
	500 page 이상		500 page 이하	진한원고,사진, 그림(고품질 출력)	1page
A 4 (210*297)	30 원(양면 1page)	40(단면 1page)	50 원	50~100 원	60 원
A 3 (297*420)	80 원	90 원	100 원	100~200 원	120 원

2. 소형 칼라복사.출력/ 대형칼라복사.출력

규격	전용지(90g)			
	500page 이상	1~30page	31~100Page	101~500Page
A 4 (210*297)	190 원	450 원	350 원	250 원
A 3 (297*420)	490 원	1000 원	800 원	600 원

* 제본비는 무선제본 2,000~3000 원 입니다.
* B5 와 A4 동일 B4 와 A3 동일 합니다.
* 대량 물량전문 , 하청 환영일반흑백 출력시 원고가 TEXT 가 아니고 , 그림이나 사진, 검은색이 많을시엔 가격이 ...추가되며, 특히 파워포인트 배경이미지 출력시 추가됩니다.
* 접지비(반책)는 A3:50 원 A1:100 원씩 매당 추가됩니다
* 제본비는 A2- 3000 원 A1- 4000 원 표지제록스(복사)-1000 (A3 : ×2배수)

A4 기준 ----------

A4 흑백	50 원
A4 칼라	250 원
A4 간지	60 원
제본+표지	4,000 원

A3 기준 ----------

A3 흑백	100 원
A3 칼라	600 원
A3 간지	120 원
제본+표지	5,000 원

저장매체



USB메모리 EG50 16GB Good4u

6,600원 3,000원

11번가

VAT제외 6,000 원



hp 공cd cdr 슬림케이스 공시디 cd-r 개별케이...

990원 3,000원

오늘출발

G마켓

VAT제외 900 원



(이지넷) NEXT-412U3 1TB /외장하드

49,500원 3,500원

피씨브로 Npay

VAT제외 45,000 원



트랜센드 CompactFlash 800 CF 메모리카드 32...

42,900원 2,500원

오늘출발

트랜센드 스... Npay

VAT제외 39,000 원



cf카드 메모리카드 카메라 FANUC 실제 용량...

31,060원 무료

G마켓

VAT제외 28,200 원



트랜센드 CompactFlash 133 CF 메모리 카드 8...

23,100원 2,500원

오늘출발

트랜센드 스... Npay

VAT제외 21,000 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1.] [기획재정부령 제261호, 2025. 5. 1.,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3, 5217, 5218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2014. 11. 4.>

[제목개정 2014. 11. 4.]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재료비 : 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 노무비·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5. 9. 8., 2009. 3. 5.>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2009. 3. 5., 2010. 7. 21.>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 6. 30., 2025. 5. 1.>

1. 공사 : 100분의 8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7. 10. 10., 2009. 3. 5., 2025. 1. 2.>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학술연구용역, 원가조사, 공사 및 개발비용산정용역, 적산실무
계약금액조정, 경영진단・지도, M&A,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8길20 (성산동 255-6)
대표전화 : 02)3143-0041 FAX : 02)3143-0042